보

◇개정이유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0803호, 2011. 6. 15. 공포·시행)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58호, 2011. 9. 2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난사태 선포 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대상이 아닌 방제자제·약제에 대한 성능인증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 등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있는 여러 서식들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포함 사항 확대(안 제19조제2항)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시설 소유자 등의 주의의무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해양시설의 위치·규모 등 해양시설에 대한 기본정보,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 및 해양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해양경찰청장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 명시(안 제60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긴급방제 대비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다. 형식승인대상 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등의 절차 마련(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까지 신설)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하고 방제 관련 업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방제성능을 보유한 방제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시험·검정 및 인증취소 절차를 마련하여 형식승인대상 외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를 제작·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함.
- 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요건의 개선(안 별표 2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역 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대체 가능 기술자격 전공 분야를 유사 학과를 전공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환경평가실무경력에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3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의2를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입주자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 한 정보
- 2의3.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정보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사업주체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정하는 입주요건
- 2.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 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32조제5항제1호 중 "부양"을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 제32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입주자의 선정 순위
- 2.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6항 및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게 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시 기당 첨자를 감점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자산요건과 소득요건 강화(안 제11조제4항)

저소득 계층의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관련 입주요건을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도록 하고, 60 제곱미터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함.

- 나.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 신설)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시 기당첨자 감점제도 도입(안 제32조제12항제10호 신설)

국민임대주택의 실수요자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 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을 감하도록 함.

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공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9항 신설)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선정 순 위와 우선 공급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9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5호, 2009. 8.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예시 중 석유제품의 혼합판매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내용의 명확화
 - 혼합판매 등의 사실을 별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타사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 나. '석유수출입업자'의 추가
 -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 이외에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경 우도 포함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기존 석유정제업자 이외에 '석유수출입업자'를 추가
 - 다. '혼합제품'의 추가
 - 현 규정이 A, B, C 석유정제업자의 제품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A+B, A+C, B+C, A+B+C와 같은 혼합제품의 경우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존 A, B, C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이외에 '혼합제품'을 추가
- 3. 기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rightarrow 심결/법령 \rightarrow 위원회 소관법령 \rightarrow 표시광고법 \rightarrow 고시ㆍ지침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51호

2011년 9월 22일 모잠비크 마푸투에서 류광철 주모잠비크대사(짐바브웨상주)와 Eduardo Koloma 모잠비크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1년 9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 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